



#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2018년 3월호

## Contents

### 회계정보

- 회계개혁 TF 중간결과보고
- 감사인 지정관련 재무사항 신고서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세무 및 법률정보

- 2017 년도 세법시행규칙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
- 7 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 7 월부터 건강보험료 인상

###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 /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 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 위 규모이며, Global Top 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의 Newsletter 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Memb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horwath.co.kr](mailto:secretary@crowehorwath.co.kr)  
 Website : [www.crowehorwath.co.kr](http://www.crowehorwath.co.kr)

####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회계개혁 TF 중간결과보고**
**[금융위원회 2018.1.16]**
**회계개혁 TF 중간  
결과보고**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18.1.16.(화) 회계개혁 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실무작업반 논의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외부감사 대상 설정,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방안,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외부감사대상**
**1. 외부감사 대상**
**가. 개정법률내용**

□ 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 기준이 추가됨

\* 현행 외감대상 주식회사 기준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①자산 120억 이상, ②자산 70억 이상 & 종업원 300명 이상, ③자산 70억 이상 & 부채 70억이상, ④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

□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실시 의무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대상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 ('19.11월 이후 시작 사업연도부터 시행)

◦ 감사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매출액, 사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상 회사 및 감사보고서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 영국의 외부감사 대상 선정 기준 >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원칙적으로 외부감사 대상

- 자산, 연매출, 종업원 수를 모두 고려한 결과 소규모 회사이면 예외

- 소규모 회사의 정의 : ①~③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회사

①연매출 : £ 10.2백만 이하 ②총자산 : £ 5.1백만 이하 ③종업원 : 50인 이하

※ 독일, 호주도 연매출·총자산 금액만 다를 뿐 동일한 방식으로 기준 설정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및 공시범위를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 ⇒ 유한회사에 대한 별도 규정없이 3월 중 시행령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2.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가. 개정법률내용**

□ 상장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사\*는 9년 중 3년은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

< 주기적 지정 예외 사유 >

i) 과거 6년간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

ii)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시행령)

나. 추진 방향

주기적 지정 예외 사유 관련

- 법상 예외사유로 증선위 감리가 지목됨에 따라 감리시스템선진화와 연계하여 운영
- 시행령상 추가하는 예외사항은 합리적이고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
- \* (예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우수 & 증선위 감리 신청 등

주기적 지정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정제 운영방식을 개선

< 지정방식 개선과제(안) >

(i) 특수한 사정이 있는 기업의 수요를 적극 고려

- Big4 수준의 감사인 등급을 신설하고, 기업이 원하는 경우 (최)상위 등급 또는 글로벌 회계법인 제휴 감사인 중에서 지정
- 지배·종속회사의 경우 동일 감사인 지정 신청 가능

(ii) 대형-중소 회계법인 간 형평성 제고

- 대규모 회사를 지정받은 경우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폭 확대 등
- \* 지정점수 = 감사인 점수 / (1 + 既지정받은 회사 수)

(iii) 지정감사 품질 제고

- 지정감사인 자격을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에 한정 등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감사인력·이사의 보수, 감사품질관리 절차 등의 작성·공개 수준이 미흡한 경우 지정점수 일부 차감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3.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가. 개정 법률내용

- (등록 의무) 금융위가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에 한하여 주권상장 법인의 감사업무 수행을 허용
- \* 인력, 예산, 물적설비, 감사품질관리를 위한 심리체계, 보상체계 등
- (등록 취소) i) 등록 후에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거나, ii) 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이상의 증선위 조치 시 취소 가능

다. 추진방향

- (등록요건) 회계업계의 경쟁력이 「영업력」에서 「감사품질」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요건 마련
-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량지표를 최대한 활용
- \* (예) 등록 공인회계사를 40명 이상으로서 금융위가 정하는 규모로 보유하고, 그 중 일 정비율 이상은 감사품질관리 인력으로 운용
- 국내 회계업계의 감사품질을 저해하는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요건 추가
- \* (예) 로컬 회계법인들은 규모 확대를 위해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고려없이 독립채산제 형태로 분사무소를 남설 → 통합관리법인 형태 운영의무 부과

- 감독) 품질관리 감리를 통해 등록요건 유지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품질관리가 우수한 회계법인에 더 많은 회사가 지정되도록 지정점수 산정체계를 개선
- (회계법인 대형화 유도) 중소기업법인들 간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 또는 분할, 합병의 법적근거를 마련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제**
**4.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제**
**가. 개정 법률내용**

-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제를 도입
  - \*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19년 감사보고서부터 시행 (자산규모별로 '23년까지 단계적 도입)
  - 회사 대표자는 매년 주총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나. 추진 방향**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정착
  - 내부회계관리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반영
    - 감사위원회의 역할, 회계부서의 독립성,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포함
  -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관련 주요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
    - 기업,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에 소홀한 경우 외감법상 제재(임원 해임 권고, 직무정지 등) 조치
-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적극 지원
  - 내부회계관리 관련 교육, 컨설팅 등을 위한 전담조직을 거래소내에 설치(공인회계사회는 전문가 상담 및 현장파견 등 지원)
  - 기업 대표이사가 회계윤리 교육(금융위 인정)을 이수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 상장협 주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공청회 개최 (2월)

**지정관련 재무사항 신고서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감사인 지정관련 재무사항 신고서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2018.2.28]**
**개요**
**1. 개요**

- '14.5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으로 재무비율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을 지정\*\* 대상에 추가

\* ①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초과, ② 부채비율 200% 초과, ③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상장예정법인, 감리결과조치, 관리종목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감사인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가 회계법인을 지정

- 이와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관련 재무사항 신고서 제출의무 신설('14.12월)
  - (제출대상) **모든** 주권상장법인(금융회사 및 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
  - (제출기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 (제출내용) 회사의 업종,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에 관한 사항
  - (작성기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 \*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연결기준으로 작성하며, 원단위로 기재

**작성방법 및 제출 2. 신고서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  
**절차**

2.1 (신고서식 선택) DART편집기의 ‘외부감사관련 → 회사용-감사인지정관련’ 메뉴를 선택하여 전자신고서식에 따라 작성

2.2 (신고서 작성) 일반사항(회사명, 사업연도 종료일 등), 소속 업종과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을 ‘기재상의 주의’를 참고하여 입력

◦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는 **연결기준(연결재무제표상 금액)**으로 작성하고 그 외의 회사는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 소속 업종은 통계법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업종명\*을 클릭하여 선택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한국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업종명(연결기준이 아닌 개별회사의 업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업종을 재무사항 신고서에 기재하였을 경우 회사는 추가자료 제출 등을 통해 업종변경 사유를 직접 소명할 수 있어야 함

2.3 (공문 첨부) 회사명, 대표이사 직인 및 제출문구 등이 포함된 공문을 별도로 작성한 후 스캔파일을 신고서식에 첨부

2.4 (파일 점검) 제출전 DART편집기의 ‘편집 → 파일형식 검사’메뉴 실행후 오류\*여부 확인 및 수정하고 제출용 파일로 전환

\* 예) 공문 미첨부, 부채비율 또는 이자보상배율의 소수점 이하 표시방법 오류

2.5 (전자문서 제출) 금융감독원 DART접수시스템(<http://filer.fss.or.kr>)에 접속하여 ‘① 화면상단의 문서제출 → ② 파일첨부 → ③제출버튼’을 순차적으로 클릭하여 전자문서 제출\*

\* 동 신고서는 외부에 공시되지 않음

**유의사항 3. 신고서 작성·제출시 유의사항**

재무비율 산정근거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수치와 일치

◦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상의 자·본·총·액·을 기재하며, 비지배 지분을 자본총액에서 제외하지 않음

◦ 이자비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금융비용에 포함하여 표시한 경우, 금융비용 중 이자비용 금액을 재무제표주석에 반드시 기재하고 동 금액을 신고서에 기재

- 자본화된 이자비용은 제외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금액으로 하며, 이자수익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비용 총액으로 기재

※ 신고서에는 반드시 원단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재무제표 공시시 적용한 금액단위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대표이사 직인 등이 포함된 공문을 별도로 첨부

대표이사 직인 등이 포함된 공문을 별도로 첨부

◦ 신고서에 첨부하는 공문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회사명, 대표이사의 직인 및 제출문구\*는 반드시 포함

\*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 조의 3 제 1 항제 7 호, 동법시행령 제 4 조 제 8 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 18 조제 4 항 등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작성한 감사인 지정관련 재무사항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

#### 향후계획

#### 4. 향후계획

- 금융감독원은 제출된 신고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일부 회사에게 작성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선정된 회사로서 '17.12월말 결산법인'은 '18.4월에 지정 통보할 예정임(통상 매월 11일 ~ 14일경 지정 통보)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2017년도 세법 후속조치 시행규칙 개정**
**2017년도 세법시행  
규칙 개정**

- 정부는 2017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3월 21일자로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과근로수당 비과세대상 추가직종 구체적 규정 (소득규칙 §93④ 등)**

구 분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청소·경비관련 단순노무직	-청소·경비관련 단순노무직(94)
조리·음식 서비스직	-조리사(441) -식음료서비스 종사자(442)
매장판매직	-매장 판매종사자(521) -단말기 및 통신서비스 판매원(5311) -온라인 쇼핑 판매원(5312)
단순노무직	-음식 관련 단순종사자(952) -판매 관련 단순종사자(953) -농림·어업 관련 단순종사자(991) -계기·자판기·주차관리 종사자(992)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종사자(999)

(적용시기) 201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국세환급가산금,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관세과다환급금 징수가산금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국기규칙 §19의 3 등)**

현 행	개 정
정기예금 이자율(1.6%)을 적용하여 과세	최근 시중금리 추이등을 반영하여 1.8%로 인상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2018.1.1 이후 개시하는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적용

**3.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의 추가업종 규정 (소득규칙§4조의3)**

구 분	추가업종
콘텐츠	①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광고업 ②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관광	①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사업
과학기술서비스	①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②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업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4.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를 조정(소득규칙 §14조의 2)**

현행	개정
중소기업은 임금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율 (3.3%)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가능	평균임금증가율을 3.6%로 조정(최근 3년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수준을 감안)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3월 12일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취득세 증여추정배제기준 조정안**

구분	현재	조정
30세이상 세대주	2억원	1억5천만원
40세이상 세대주	4억원	3억원
30세이상 비세대주	1억원	7천만원
40세이상 비세대주	2억원	1억 5천만원
30세미만	5천만원	5천만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아래와 같이 인상하여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구분	현재	조정
상한액	월 449만원	월 468만원
하한액	월 29만원	월 30만원

다만 연금보험료 요율(9%)은 변동이 없습니다.

 7월부터 건강보험료 인상

2018년 7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르면 본인부담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액이 현재의 월 243만7천원에서 월 309만7천원으로 오르고, 이후 매년 조금씩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배당·임대소득등이 연간 3,400만원(현재 연간 7,200만원)초과시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업 무 소 개

<h2 style="text-align: center;">업 무 소 개</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li> <li>▪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b>Outsourcing</b></li> <li>▪ 외국/외투기업 <b>Business Process Outsourcing</b> (경리, 급여, 총무, <b>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b>)</li> <li>▪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li> <li>▪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li> <li>▪ 조직, 인사 전략 / <b>HR</b></li> <li>▪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BSC</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li> <li>▪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li> <li>▪ <b>M&amp;A, IPO</b>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li> <li>▪ <b>IFRS</b>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li> <li>▪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li> <li>▪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BSP</b></li> <li>▪ 정보화계획/ <b>ISP / IT Consulting</b></li> <li>▪ <b>PI / CRM / Risk Management</b> 등</li> </ul>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b>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a href="mailto:secretary@crowehorwath.co.kr">secretary@crowehorwath.co.kr</a></b>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 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member.*